의안번호	제 153 호
의 결	2011년 5월 일
연월일	(제 300 회)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1년 5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 153

제출연월일 : 2011년 5월 2일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과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 하기 위하여
- 주민 참여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 (안 제4조)
- 주민참여 방법 및 의견제출 절차 (안 제5조, 제6조)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 (안 제10조)
-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- 위원에 대한 교육 (안 제15조)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 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주민"이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운영계획의 수립 및 적용범위)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한다.
- 제5조(주민참여 방법) 도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방법은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46조제1항의 방법과 토론회, 위원회를 통한 방법으로한다.
- 제6조(의견 제출 절차) 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7조(결과 공개)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8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)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
 - 2.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국별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
 - 3.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
 - 4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
- 제10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 - 1. 시장, 군수가 추천한 사람
 - 2. 「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3. 분과위원회별 주관 실·국장이 추천하는 관계분야 전문가
 - 4. 기타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표의 분과위원회 순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12조(분과위원회 설치 등)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.
 - ②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- ③ 분과위원회별 구성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10명 이내로 하되 개별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도지사가 배정한다.
 - ④ 분과위원장과,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실국 주무과장이 된다.
 -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다.
 - 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,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
- 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(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)는 도지사 또는 위원 장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4조(해촉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 - 1. 도 이외의 지역 또는 시장·군수로부터 위원으로 추천을 받을 당시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
 - 2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 - 4. 위원회 운영취지, 원칙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- 5.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

- 제15조(위원에 대한 교육)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·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수당 등)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(제12조 관련)

명 칭	소 관 부 서		
	주관실국	부 서	
정책복지 분 과	보건복지국 (복지장애인과)	의회사무처, 감사관, 정책관리실, 보건복지국, 보건환경연구원, 충북도립대학	
행정문화 분 과	문화여성환경국 (문화예술과)	공보관, 행정국, 문화여성환경국, 자치연수원, 청남대관리사업소, 여성발전센터, 북부출장소	
산업경제 분 과	경제통상국 (생활경제과)	경제통상국, 농정국, 농업기술원, 산림환경연구소, 축산위생연구소, 농산사업소, 내수면연구소	
건설소방 분 과	균형건설국 (균형개발과)	균형건설국, 도로관리사업소, 소방본부, 각급 소방서	
전략산업 분 과	바이오밸리추진단 (바이오밸리과)	바이오밸리추진단, 미래산업과 사무중 태양광산업분야, 기업유치지원과 사무중 MRO산업분야	

^{* ()}은 주무과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39조(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 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

-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
- 2.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- 3. 사업공모
- 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